

부 록 2-나-1
미합중국

1. 이 부록은 이 협정에 따라 특정 원산지 상품에 미합중국이 적용할 관세율 할당을 반영하는 미합중국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TSUS)에 대한 수정을 규정한다. 특히, 이 부록에 포함된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은 HTSUS의 제1류 내지 제97류에 명시된 관세율 대신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이 적용된다. HTSUS의 다른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록에 기술된 물량의 대한민국 원산지 상품은 이 부록에 규정된 대로 미합중국 영역으로 들어오는 것이 허용된다. 더 나아가, 이 부록에 규정된 관세율할당에 따라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입된 원산지 상품의 어떠한 물량도 HTSUS의 다른 부분에서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관세율 할당의 쿼터 내 물량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2. 이 부록에서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미합중국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모든 관세율할당을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한다.

국영무역기업

3. 미합중국은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와 그러한 조건에 따라서만 자국의 영역에서 국영무역기업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이 수입·구매 또는 유통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낙농품(HTSUS의 제4류에 대한 미합중국 추가 주 제1호에 기술된 것)

4. 가. 특정 연도에 무관세로 들어오도록 허용되는 다호에 기술된 대한민국의 원산지 상품의 총량은 아래에 명시되어 있다.

연도	물량(미터톤)
1	300
2	309
3	318
4	328
5	338
6	348
7	358
8	369
9	380
10	무제한

물량은 선착순에 따라 들어온다.

나. 가호에 기재된 물량을 초과하는 총량으로 들어오는 상품에 대한 관세는 부속서 2-나(관세철폐) 제1항사호에 규정된 단계별 양허유형 G에 따라 철폐된다.

다. 가호와 나호는 다음의 표 1의 세번에 대하여 적용된다 : AG04022950, AG04029990, AG04031050, AG04039095, AG04041015, AG04049050, AG04052070, AG15179060, AG17049058, AG18062082, AG18062083, AG18063270, AG18063280, AG18069008, AG18069010, AG19011040, AG19011085, AG19012015, AG19012050, AG19019043, AG19019047, AG21050040, AG21069009, AG21069066, AG21069087 및 AG22029028.

표 1

<u>품목번호</u>	<u>품목설명</u>
AG04022950	관세항목 04022950에 규정됨
AG04029990	관세항목 04029990에 규정됨
AG04031050	관세항목 04031050에 규정됨
AG04039095	관세항목 04039095에 규정됨
AG04041015	관세항목 04041015에 규정됨
AG04049050	관세항목 04049050에 규정됨
AG04052070	관세항목 04052070에 규정됨
AG15179060	관세항목 15179060에 규정됨
AG17049058	관세항목 17049058에 규정됨
AG18062082	관세항목 18062082에 규정됨
AG18062083	관세항목 18062083에 규정됨
AG18063270	관세항목 18063270에 규정됨
AG18063280	관세항목 18063280에 규정됨
AG18069008	관세항목 18069008에 규정됨
AG18069010	관세항목 18069010에 규정됨
AG19011040	관세항목 19011040에 규정됨
AG19011085	관세항목 19011085에 규정됨
AG19012015	관세항목 19012015에 규정됨
AG19012050	관세항목 19012050에 규정됨
AG19019043	관세항목 19019043에 규정됨
AG19019047	관세항목 19019047에 규정됨
AG21050040	관세항목 21050040에 규정됨
AG21069009	관세항목 21069009에 규정됨
AG21069066	관세항목 21069066에 규정됨
AG21069087	관세항목 21069087에 규정됨
AG22029028	관세항목 22029028에 규정됨